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
번
호

294

제출년월일 : 1998. 2.
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사유

- 학생수 격감으로 인한 소규모 중학교의 분교장 개편

□ 주요골자

- 소규모 중학교 분교장 개편(1교)

개편전 명칭	개 편 후 명칭	위 치	개편년월일
청풍중학교	제천중학교 청풍분교장	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 6번지	98. 3. 1.

□ 개정근거

- 교육법 제82조, 제85조, 교육법시행령 제107조
-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
- '98. 학생수용계획지침 ('97. 2. 21.)

□ 조례안 : 덧붙임

□ 참고사항 : 덧붙임

- 신·구조문대비표
- 관계법령발췌서
-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소규모학교 개편기준
-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·의결서 사본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「[별표3]」을 별지와 같이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